

지게차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안내(2차)

Q1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내용 중 지게차 교육 이수가 필요한 지게차는 어떤 건가요?

A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번호판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입니다.

Q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교육 이수 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나요?

A2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경우는 필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사업장내에서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를 운행할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의 해당 유·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별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판단기준 참조)

A3 ①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②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③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장비입니다.

Q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를 운행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4 지자체에서 지정한 학원(기관)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12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Q5 관련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은 지자체 지정 중장비 학원·직업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기관 명단은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공지사항 “지게차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안내) 또는 대한건설기계협회(홈페이지-통계자료실-건설기계교육기관)에 문의바랍니다.

Q6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도 3톤 미만과 3톤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6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는 교육 이수 후 지게차 ‘톤수’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Q7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용 면허증이 발급되는 건가요?

A7 아니요.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이수증을 소지하시면 됩니다.

Q8 이미 지게차 관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8 아니요. ①지게차(건설기계)조종면허 ②소형지게차조종면허 소지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판단기준

구 분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정의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제17조 관련]
사용 연료	○ 디젤, LPG, 배터리(전동식) 등	○ 배터리(전동식)
타이어 종류	○ 타이어식(공기주입식)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공기주입식이 아닌 마모되어 없어지는 타이어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운행 장소	○ 사업장내, 도로 등	○ 사업장내(도로 운행 불가*)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
운전 가능 자격	3 톤 이상	①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② 소형지게차조종면허 취득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③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중장비학원, 운전학원 등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이수한 자* *운전면허 자격이 없어도 가능
	3 톤 미만	